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조정안

I. 추진경과

- ‘06. 6. 28 제80회 국정과제회의(장애인지원종합대책) 보고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연구기획단의 운영을 대통령께 보고
- ‘06. 8. 16 장차법 연구기획단 구성 및 제1차 회의
 - 이 회의에서 기획단의 공식명칭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으로 합의하고 매 2주마다 회의 개최기로 결정
 - 기획단 구성 (팀장 : 차별시정비서관, 정부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 및 장애계 주요 단체의 대표)
 - 정부 :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건교부, 국조실, 국가인권위(읍저버) (국조실, 국가인권위 외 9개 부처)
 - 장애계 : 장추련 7개 그룹 대표 및 전문가 참여
- ‘06. 9. 27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 제4차
 - 정부와 장애계 간 1차 합의형성 : 정부와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이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함
 - 이 합의에 따라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은 소위원회를 두어 회의를 운영기로 결정하고 소위원회는 총론소위와 각론소위의 두 축으로 구성기로 함
- ‘06. 10. 18 및 ‘06. 11. 2~3, 두 차례에 걸쳐 총론소위와 각론소위 회의 개최, 의견 조율
- ‘06. 11. 8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 제5차 회의에서 정부조정안과 장애계 조정안을 작성하여 ‘06. 11. 15 제6차 회의 개최기로 합의

II. 조정안의 요지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총칙 부분	총칙 부분
□ 법 명칭 조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등 지원법률에서는 지원대상의 확정을 위해 “장애인”에 초점을 둔 개념규정이 타당하나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확정된 법주로서의 장애인보다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장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합당	* 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 차별이고, 순수하게 장애인 차별 및 구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유지를 주장하나, 조정할 수 있음
□ 장애와 장애인 개념의 수정 ○ 장차법안 개념 - 장애 :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 - 장애인 :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정부안의 개념 - 장애 : 일상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정부안 제2조 제1항) - 장애인 : 장애가 있는 사람 (정부안 제2조 제3항) ○ 장차법안에서 정의한 장애개념 중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는 그 자체가 이 법을 통해 금지하려는 차별임. 또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도 이미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역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함. 법을 통해 금지하려는 행위를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의 속성에 미리 포함하여 대상을 정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 장애인은 현재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이는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행위에 포함하여 규정	- ‘장애’ :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로 조정할 수 있는바, 사회생활을 제외하고 일상생활만 명기할 경우 일상에만 한정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 ‘장애인’ : 사회일반인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조정하되, 과거 장애경력으로 인한 차별은 제4조 차별금지에서 규정함
□ 차별행위를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규정 (정부안 제3조) ○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도 별 문제는 없음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직접차별에 과거 장애기록을 사유한 차별과 장애가 있다고 간주하여 행하는 차별을 포함함. ○ 또한, 장차법안에 포함된 “장애인 관련자”를 삭제하는 대신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보호자 등에 대한 부당행위 및 장애인보조견이나 재활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차별로 규정함.	
☐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 보강 (정부안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 ○ 정당한 사유를 ① 과도한 부담과 ② 진정직업자격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 ○ 과도한 부담 여부와 진정직업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용어정의 보강 (정부안 제4조) ○ 광고, 장애에 관한 기록, 장애로 간주되는 경우, 보조견, 사용자, 노동조합 등에 관한 정의를 추가 ○ 정보의 개념을 전자정보, 비전자정보, 개인정보로 구분하여 정의 ○ 시설의 개념도 복지시설 등과 편의증진보장법에서 말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정의	
☐ 복합차별 문제에 관한 규정 보완 (정부안 제5조) ○ 현행 장차법안은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모두 장차법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논란의 소지가 크므로 정부안은 차별의 사유가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 두 가지 가운데 장애가 주된 요소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도록 수정	
시정기구	
☐ 장애차별시정기구 ○ 장애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는 것으로 규정 ○ 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라 현행 장차법안의 기구 관련 규정의 대부분은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함	
시정권한	
☐ 시정명령권 ○ 우선,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서는 시정명령권을 삭제함 ○ 장애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는 인권위 내에 설치되면서도 인권위와 달리 시정명령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검토를 거쳐 결정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 다만, 장애차별시정기구에만 별도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 시정명령권의 발동요건을 엄격히 제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참조) - 현행 장차법안에서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시정명령의 이행유도를 위한 제도로 성격부여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시정명령권 부여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 손해배상 ○ 차별행위가 매우 악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케 할 수 있도록 규정 ○ 차별행위의 악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모법에 명시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 행위 및 그 행위의 원인과 관련된 입증책임을 서로 나누어 지도록 함	
벌칙	
☐ 차별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장차법안 제78조) ○ 시정명령권 도입시에는 이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으로 수정 ○ 시정명령권 미도입시에는 인권위법을 참조하여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기타 업무방해, 자격사칭 등에 관한 벌칙 ○ 인권위법을 참조하여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인권위 법 수준으로 조정 가능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 단계적 확대	* 총/각론의 각 규정의 시행 시기나, 대상자를 정리하여 부칙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Ⅲ. 조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명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명칭 :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법안의 명칭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에 초점을 둔 것이나 동 법안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은 “장애”라는 사실(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을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애를 사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사유로 차별 받아 발생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장애인’ 차별이고, 순수하게 장애인 차별 및 구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기타 다른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의 유지를 주장하나, 조정할 여지는 있음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원안	원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동작 등 개인이 일상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말하며 이 기본적인 동작과 이에 초래된 <u>상당한 제약의 구체적인 내용</u>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법안에서 용어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사유로 명시하여 별도의 조를 설정하여 규정	기본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되, - ‘장애’라 함은 “ <u>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u> ”로 조정할 수 있는바, 사회생활을 제외하고 일상생활만 명기할 경우 일상에만 한정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 ‘장애인’ : 과거 장애경력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조정하되, 과거 장애경력으로 인한 차별은 제4조 차별금지에서 규정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 “장애”의 정의 (정부안 제2조 제1항) - 법안의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및 “사회 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들 자체가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삭제. - “일상생활”의 의미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을 주로 하되 이것과 “상당한 제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장애인”의 정의 (정부안 제2조 제2항) - “장애” 정의에 손상 등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었으므로 과거 장애경력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 재경부 - “질병” 삭제 - “손상 등에 관한 기록” 및 “손상 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삭제 - 과거 장애경력은 이 호에서 삭제하되, 장차법안 제4조(차별금지)에 포함 - 제4조(차별금지)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제> ○ “장애인 관련자”를 하나의 주체로 정의하기보다는 장애인 관련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토록 하는 것이 합당 - 따라서 법안 제3호는 삭제하고 대신 “차별”의 개념에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또한 보조조건이나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시행 후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유리 -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과 보조조건이나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 원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조항마다 장애인 관련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개별 조항에 명기한다면 조정 가능함 <i>장애인 관련자 이 개념도 필요.</i>
	<u>제3조(차별행위)</u> ○ 법안에서 용어정의에 포함된 “차별”을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좀 더 분명하게 규정 - 이와 함께 차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당한 사유”를 차별행	* 조정안처럼 제2조와 3조로 분리하여도 별 문제는 없으나, 용어 개념 규정은 한 조문으로 모으는 것이 관례로 보임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위를 규정하는 이 조에 함께 규정하고 - 차별행위의 예외로서 “적극적 조치”의 내용도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이 조에 규정	
4.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정한 내용은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안의 내용 또한 유사하므로 조정의 여지는 있음 * 적극적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1. 장애인을 장애 또는 장애에 관한 기록 또는 장애가 있다고 간주됨을 이유로 <u>정당한 사유 없이</u>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직접차별의 사유에 장애 외에 장애에 관한 기록과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상태까지 추가하여 장애기록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까지 장애인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항들을 사유로 일어나는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사유 없이”와 “장애 … 을 이유로” 추가. 법안의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는 삭제 - 복합차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장애 … 을 이유로”를 추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 - 법안의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는 그 다음의 “제한·배제·분리·거부”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삭제 ○ “제한·배제·분리·거부” 그 자체가 곧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수정 - 단,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사구를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의 바로 앞에 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부사구는 “제한·배제·분리·거부”를 수식하는 위치에 두어야 함. - 정당한 사유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의 작위	* 과거 장애 경력에 관한 규정은 차별금지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 → 따라서 원안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의 삽입, ‘장애인 관련자’의 삭제는 조정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또는 부작위 자체에 부수하는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 또는 당해 행위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그러한 행위의 결과 이미 발생한 불리한 결과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 따라서 “제한·배제·분리·거부”가 “불리한 대우”를 초래하는 수단 내지 과정으로서의 행위라 할 때 이미 그러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불리한 결과는 당해 행위라는 사유에 의해 이미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불리한 대우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으로서의 제한·배제·분리·거부의 행위 자체에 준거하여 판단되어야 함. - 간접차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부사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수식하는 위치에 있으나 이는 간접차별의 개념 자체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직접적 행위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기 때문임. o 법안 제3호 “장애인 관련자” 규정 삭제에 따른 지구 수정	
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o 법안 제3호 “장애인 관련자” 규정 삭제에 따른 지구 수정	* 위와 같음
다.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정당한 사유 없이”로 지구 수정 o 법안 제3호 “장애인 관련자” 규정 삭제에 따른 지구 수정	* 원안 유지가 원칙이나, 정부 조정안처럼 정당한 사유의 내용 속에 진정 직업 자격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무방함
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이하 이 호에서 “불리한 대우 등”이라 한다)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본다. 이 경우 광고는 불리한 대우 등을 부추킨다고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광고를 포함한다. o 법안 제3호 “장애인 관련자” 규정 삭제에 따른 지구 수정	* 원안을 살리되,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반하여”를 앞머리에 삽입하고, 매체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까지는 조정 가능함,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는 위원회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임 -> 광고행위에만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함 정신 7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o “광고”로만 제한하는 대신 광고를 직접 행하는 경우와 광고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부추긴다고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광고까지 포함	
<신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및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관련 조항에서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해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본다. 단, 장애인 관련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그의 행위 역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o 법안 제3호 “장애인 관련자”를 삭제하는 대신 신설	* 만일 ‘장애인 관련자’ 규정을 삭제하게 된다면, 정부 조정안도 유용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신설>	6.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동행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 등(이하 보조견과 재활보조기구 등을 합쳐 “보조기구 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본다. o 법안 제3호 “장애인 관련자”를 삭제하는 대신 신설	* 위와 같음
5.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②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하 “과도한 부담 등”이라 한다)이 따를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부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	* 원안
		* 정부 조정안과 같이 진정 직업 자격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무방함
		* 과도한 부담의 내용을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동의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해 금지된 차별행위의 구체적인 성격 및 그에 수반하는 비용,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 전체적인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이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안의 “과도한 부담”을 “정당한 사유”라는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꾸고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과도한 부담 등과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격상 불가피함으로 구분. 또한,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격은 교육 등 서비스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과도한 부담 등의 산정을 위한 주요 기준을 명시하고 더 세부적인 기준 및 고려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함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나, 무용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기다들을 필요가 있음
6. “적극적 조치”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⑥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정한 내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법적·정책적 조치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 타당함
7.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산이 우려되는 등 사업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정부안 제2조 제3항으로 이동하여 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6.11.15. 11.15.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신설>	2. “장애에 관한 기록”이라 함은 과거 특정 시점 혹은 기간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이 사실이 문자 등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다.	
<신설>	3. “장애가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라 함은 그 간주하는 주체가 그 간주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그 간주 대상이 되는 자가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 장애를 가졌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시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4.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한다” 함은 장애인이 그 대리·동행하는 자 이외의 모든 행위주체(사람과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와 갖는 모든 상호작용과 장애인이 여하한 공간에서든 이동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합치하여 그 상호작용을 대신 또는 보조하거나 당해 상호작용을 대신 또는 보조하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상호작용에 참여하거나 장애인의 이동을 장애인의 의사에 합치하여 돕기 위해 당해 이동 시점 및 공간에 장애인과 함께 이동함을 말한다.	
<신설>	5.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행한다” 함은 장애인이 본인 이외의 행위주체(사람과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와 갖는 모든 상호작용 및 여하한 공간에서의 이동에 있어서 당해 상호작용 및 이동이 행하여지는 시점 및 공간에 보조견과 함께 있음을 말한다.	
<신설>	6.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을 말한다.	
<신설>	7. “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보조구·작업설비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9.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 단체 등을 포함하며,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 또는 공사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말한다.	
<신설>	10.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이 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8. “교육책임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11.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수 및 당해 교육기관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교육책임자”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 “교육기관”의 정의 추가 : 이 법의 단계적 적용 등을 위해 필요 - “교육기관”의 정의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추가 ※ 교육부 : 8. “교육책임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 여성가족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삭제	
9. “의사소통”이라 함은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상이나 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안 제14호로 이동하여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10. “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정보 및 재확보조공학을 이용한 화면확대,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언어, 비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및 지식을 말한다.	13.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단, 이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자연인·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그 처리방식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인가의 여부와 그 획득·가공·처리·보유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정보는 그것의 활용의의와 그것의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봄 1.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접근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정보 2. 공공기관이 획득·보유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관한 개인정보 3. 민간기관이 생산·보유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접근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정보 4. 민간기관이 획득·보유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관한 개인정보 ○ 위에 구분된 것 중 1과 3은 “접근대상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2와 4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정보에 관한 규정은 그 정보의 생산·획득·보유 주체가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규정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구분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것은 정보처리방식일 것임. 즉, 생산·획득·보유하는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인가 아니면 오프라인방식으로 처리된 것인가 하는 것임. 정보처리방식까지 고려한다면 정보는 논리적으로 여덟 가지 종류로 구분 가능함.	* 장차법에서 정보의 개념은 정보통신 또는 전자화된 정보의 범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원안을 유지하되, 정부 조정안처럼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도 조정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 하지만, 오프라인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정보라기보다는 복지부나 문화부 소관에 가까운 촉각 가능한 문헌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 o 또한, 정보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내용으로서의 정보와 그러한 내용이 장애인에게 접근·획득되기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의 정보전달도구(혹은 넓은 의미로 의사소통수단)는 원칙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봄. - 정보전달도구는 내용으로서의 정보가 아니라 정보통신 혹은 정보화에만 적용될 수 있음 - o 현재 법안은 정보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보에 관한 법안의 규정은 오프라인 정보와 구분하여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정통부 : 10. “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 - 오프라인상의 정보까지 포함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정보는 정촉법 제2조 제1호 정의로 충분 - 정촉법 제2조 제1호 :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위치 이동>	14. “의사소통”이라 함은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상이나 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 법에서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11.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정보통신 및 재활보조공학 등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활동을 말한다.	15.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정통부 : 11.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 - 정촉법의 정보통신 정의로 충분 - 정촉법 제2조 제3호 :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	* 정부 조정안 수용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12.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을 창작·생산하고 향유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고 문화·예술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16. 원안	
13.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17.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o 지구 수정 : 문화부 수정의견 반영	* 조정안 수용 가능
14.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8. 원안	
15.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19. 원안	
16. “장애인체육지도자”라 함은 체육지도자로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0. 원안	
17. “가정”이라 함은 취사, 취침 등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21. 원안	
18.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2.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수용 가능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o 법안 제18호의 용어수정 : 법안 제12조(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의 “시설”과의 용어혼란을 피하기 위한 수정	
<제23호 신설>	23.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동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동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을 말한다. o 제23호 신설 : 법안 제12조 규정의 “시설”의 개념 명확화	
19.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4. 원안	
20.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5. 원안	
21.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6. 원안	
22. “폭력”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	27. 원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적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원안	
제3조(차별판단)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본다.	①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원인 중 주된 요소가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본다. ○ 복합적 원인에 의한 차별의 경우 이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차별을 명확화 - 복합차별 규정의 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를 통해 해결	* 이 조항은 차별판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바, 조정안의 경우 “주된 요소가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설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해도 장애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정안에 반대하고 원안을 유지함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원안 X (2) 제2항은 정기심사. 모든 장애인, 특히 장애인에게 25.11.15. 25.11.15. 25.11.15.	25.11.15. 25.11.15. 25.11.15.
제4조(차별금지)	제6조(차별금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삭제 ○ 이 법이 규율하는 차별금지의 범위를 명확화 -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제5조(차별금지)에서도 동 법안이 정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예외적인 경우”는 정부안 제3조 제3항의 규정으로 충분함 ※ 재경부 -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존치하며, 과거 장애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도 포함 → 모든 생활영역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이와 함께 예외적인 경우, 즉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혹은 차별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	* “모든 생활영역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지정생활영역에 대한 차별금지는 필요할 때만 평등권 제1항 이런기 시도는 그 때 때
제5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① 원안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원안	
③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정부안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로 이동하여 규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별 현황 파악 및 차별시정계획을 세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원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서비스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개인 및 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원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③ 원안	
④ 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 2006. 11. 15.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록 시정하여야 한다.	
<신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이 법 제 0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⑥ 제5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차별금지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절 고용	
제7조(차별금지)	제9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 모든 근로관계 및 그 전 후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u>정당한 사유 없이</u>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 노동부 수정안 중 단서조항의 “직무 성격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안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포함 가능 ○ 고용상 차별금지를 근로관계로만 한정하고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 노동부 의견 일부 반영 ※ 노동부 :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u>정당한 사유 없이</u>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의 본질적 성격 및 사업의 운영상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고용상 차별금지는 근로관계로만 한정 필요 - 진정직업자격 개념 도입 필요 : 노동부 수정안의 단서조항	* 총칙에 “정당한 사유없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조항마다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를 추가할 것인지는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정부 조정안에는 ‘전보’가 누락되어 있으나, 원안대로 살려야 함
② 채용된 장애인이 제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사용자는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채용 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누리기 위해 제8조의 규정에 정해진 정당한 편의제공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용된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u>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안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합쳐서 규정하고 채용 및 채용 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으로 내용 수정 ※ 노동부 : 삭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③ 사용자는 채용·승진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 도구의 개발 및 지원, 시험기간의 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후에 사용자가 시행하는 ~~모든~~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 아닌 근로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정부안 제2항에 함께 규정 ※ 노동부 : 삭제.	* 2항과 3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었으나, 2항과 3항은 그 취지와 강조점이 다르므로 각각 존속시켜야 함
④ 상시 5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된 장애인 대표기구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표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표기구의 건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삭제> ○ 노사협의회 기능과 중복 기능성 : 노동부 의견 반영	* 장애인 대표기구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노사협의회와는 다르고, 위 장애인 대표기구는 이 절에 정한 규정들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바, 원안 유지
⑤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안 ※ 노동부 : 삭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수정·보완	* 관련법을 정비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안에 동의 가능, <u>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u> 의 <u>제9조</u> 의 <u>규정을 수정·보완</u> 하는 것.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적절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 총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 합당한 구체적인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원안 유지
제8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0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조 2. 근무시간의 변경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4.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5.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6.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7.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8.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재활보조공학적 설비 및 도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원안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수단 이외의 수단 및 이에 의한 개조·변경·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지침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모범에 규정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토록 위임 -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단서조항 신설 ※ 노동부 ① 사용자는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편의시설 제공, 직무·근로시간의 조정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미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복하여 규정될 필요는 적을 것으로 보임
제9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지원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장애인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의학적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용자 및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 및 관계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손상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안 제1항과 제2항을 합치되 법안 제2항을 조정안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두고, 법안 제2항 후단규정에 의한 비용부담문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케 하되 비용부담의 구체적인 방식 및 사용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다른 제도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용 가능 *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한 경우는 차별이 아니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임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o 법안 제3항은 존치하되 자구수정 ※ 노동부 : 제9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사용자는 채용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채용시 건강진단”은 '05년 10월부터 이미 폐지되어 장차법안 제9조 제1항 규정은 불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건강보호·유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차법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불필요	
제2절 교육	제2절 교육	
제10조(차별금지)	제12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u>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u> o 단서조항 신설 : 교육부 조정안 반영	* 수용 가능
②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1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3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u>정당한 사유 없이</u>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 법안의 원안을 유지하자는 장애계 의견과 교육부 의견을 절충 ※ 교육부 : ②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적절한지를 심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장애계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	* 수용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동,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안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원안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u>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o 후단 규정 수정 : 교육부 의견 반영	* 수용 가능함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원안 o “정신적 부담”을 삭제하는 것은 차별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사료 ※ 교육부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법안의 “정신적 부담”은 그 개념이 모호하므로 삭제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o 단서조항 신설 : 장애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을 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가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한 것임	* 수용 가능함
⑧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학급 및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	⑧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용 가능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지구 수정 : 교육부 의견 반영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삭제> o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정도나 유형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을 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강제조항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교육부 의견 반영	* “...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 절충 가능함 → 22%만 반영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3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 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 5. 기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원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에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둘 수 있다.	* 원안 제5호가 누락되었는바,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여야 하고,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o 법안 제1항의 경우 법안의 취지를 반영토록 하되 법안의 문장서술 방식을 수정하는 한편 각 호의 순서를 조정함. 또한, 법안의 제5호는 법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과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조정함.	* 제2항은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하여야 함
4.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 교육부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5.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진단을 통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교육기관 및 그의 지휘·관리·감독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통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당해 교육 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 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교육보조인력의 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여야 하고,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해 교육 책임자는 교내에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제12조(차별금지)	제14조(차별금지)	
①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을 장애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 제4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장애인이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의 의미를 명확화하고 법안의 원안대로 강제규정의 취지를 살리되 건교부와 복지부의 의견을 절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추가 ※ 건교부 : ①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시설을 장애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법안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	10/18) 2/12/14 11/1) 1998이후 300만명 이상 장애인 7만명 → 장애인 편의 시설 100만개, 200만개, 300만개, 400만개, 500만개, 600만개, 700만개, 800만개, 900만개, 1000만개, 1100만개, 1200만개, 1300만개, 1400만개, 1500만개, 1600만개, 1700만개, 1800만개, 1900만개, 2000만개, 2100만개, 2200만개, 2300만개, 2400만개, 2500만개, 2600만개, 2700만개, 2800만개, 2900만개, 3000만개, 3100만개, 3200만개, 3300만개, 3400만개, 3500만개, 3600만개, 3700만개, 3800만개, 3900만개, 4000만개, 4100만개, 4200만개, 4300만개, 4400만개, 4500만개, 4600만개, 4700만개, 4800만개, 4900만개, 5000만개, 5100만개, 5200만개, 5300만개, 5400만개, 5500만개, 5600만개, 5700만개, 5800만개, 5900만개, 6000만개, 6100만개, 6200만개, 6300만개, 6400만개, 6500만개, 6600만개, 6700만개, 6800만개, 6900만개, 7000만개, 7100만개, 7200만개, 7300만개, 7400만개, 7500만개, 7600만개, 7700만개, 7800만개, 7900만개, 8000만개, 8100만개, 8200만개, 8300만개, 8400만개, 8500만개, 8600만개, 8700만개, 8800만개, 8900만개, 9000만개, 9100만개, 9200만개, 9300만개, 9400만개, 9500만개, 9600만개, 9700만개, 9800만개, 9900만개, 10000만개, 10100만개, 10200만개, 10300만개, 10400만개, 10500만개, 10600만개, 10700만개, 10800만개, 10900만개, 11000만개, 11100만개, 11200만개, 11300만개, 11400만개, 11500만개, 11600만개, 11700만개, 11800만개, 11900만개, 12000만개, 12100만개, 12200만개, 12300만개, 12400만개, 12500만개, 12600만개, 12700만개, 12800만개, 12900만개, 13000만개, 13100만개, 13200만개, 13300만개, 13400만개, 13500만개, 13600만개, 13700만개, 13800만개, 13900만개, 14000만개, 14100만개, 14200만개, 14300만개, 14400만개, 14500만개, 14600만개, 14700만개, 14800만개, 14900만개, 15000만개, 15100만개, 15200만개, 15300만개, 15400만개, 15500만개, 15600만개, 15700만개, 15800만개, 15900만개, 16000만개, 16100만개, 16200만개, 16300만개, 16400만개, 16500만개, 16600만개, 16700만개, 16800만개, 16900만개, 17000만개, 17100만개, 17200만개, 17300만개, 17400만개, 17500만개, 17600만개, 17700만개, 17800만개, 17900만개, 18000만개, 18100만개, 18200만개, 18300만개, 18400만개, 18500만개, 18600만개, 18700만개, 18800만개, 18900만개, 19000만개, 19100만개, 19200만개, 19300만개, 19400만개, 19500만개, 19600만개, 19700만개, 19800만개, 19900만개, 20000만개, 20100만개, 20200만개, 20300만개, 20400만개, 20500만개, 20600만개, 20700만개, 20800만개, 20900만개, 21000만개, 21100만개, 21200만개, 21300만개, 21400만개, 21500만개, 21600만개, 21700만개, 21800만개, 21900만개, 22000만개, 22100만개, 22200만개, 22300만개, 22400만개, 22500만개, 22600만개, 22700만개, 22800만개, 22900만개, 23000만개, 23100만개, 23200만개, 23300만개, 23400만개, 23500만개, 23600만개, 23700만개, 23800만개, 23900만개, 24000만개, 24100만개, 24200만개, 24300만개, 24400만개, 24500만개, 24600만개, 24700만개, 24800만개, 24900만개, 25000만개, 25100만개, 25200만개, 25300만개, 25400만개, 25500만개, 25600만개, 25700만개, 25800만개, 25900만개, 26000만개, 26100만개, 26200만개, 26300만개, 26400만개, 26500만개, 26600만개, 26700만개, 26800만개, 26900만개, 27000만개, 27100만개, 27200만개, 27300만개, 27400만개, 27500만개, 27600만개, 27700만개, 27800만개, 27900만개, 28000만개, 28100만개, 28200만개, 28300만개, 28400만개, 28500만개, 28600만개, 28700만개, 28800만개, 28900만개, 29000만개, 29100만개, 29200만개, 29300만개, 29400만개, 29500만개, 29600만개, 29700만개, 29800만개, 29900만개, 30000만개, 30100만개, 30200만개, 30300만개, 30400만개, 30500만개, 30600만개, 30700만개, 30800만개, 30900만개, 31000만개, 31100만개, 31200만개, 31300만개, 31400만개, 31500만개, 31600만개, 31700만개, 31800만개, 31900만개, 32000만개, 32100만개, 32200만개, 32300만개, 32400만개, 32500만개, 32600만개, 32700만개, 32800만개, 32900만개, 33000만개, 33100만개, 33200만개, 33300만개, 33400만개, 33500만개, 33600만개, 33700만개, 33800만개, 33900만개, 34000만개, 34100만개, 34200만개, 34300만개, 34400만개, 34500만개, 34600만개, 34700만개, 34800만개, 34900만개, 35000만개, 35100만개, 35200만개, 35300만개, 35400만개, 35500만개, 35600만개, 35700만개, 35800만개, 35900만개, 36000만개, 36100만개, 36200만개, 36300만개, 36400만개, 36500만개, 36600만개, 36700만개, 36800만개, 36900만개, 37000만개, 37100만개, 37200만개, 37300만개, 37400만개, 37500만개, 37600만개, 37700만개, 37800만개, 37900만개, 38000만개, 38100만개, 38200만개, 38300만개, 38400만개, 38500만개, 38600만개, 38700만개, 38800만개, 38900만개, 39000만개, 39100만개, 39200만개, 39300만개, 39400만개, 39500만개, 39600만개, 39700만개, 39800만개, 39900만개, 40000만개, 40100만개, 40200만개, 40300만개, 40400만개, 40500만개, 40600만개, 40700만개, 40800만개, 40900만개, 41000만개, 41100만개, 41200만개, 41300만개, 41400만개, 41500만개, 41600만개, 41700만개, 41800만개, 41900만개, 42000만개, 42100만개, 42200만개, 42300만개, 42400만개, 42500만개, 42600만개, 42700만개, 42800만개, 42900만개, 43000만개, 43100만개, 43200만개, 43300만개, 43400만개, 43500만개, 43600만개, 43700만개, 43800만개, 43900만개, 44000만개, 44100만개, 44200만개, 44300만개, 44400만개, 44500만개, 44600만개, 44700만개, 44800만개, 44900만개, 45000만개, 45100만개, 45200만개, 45300만개, 45400만개, 45500만개, 45600만개, 45700만개, 45800만개, 45900만개, 46000만개, 46100만개, 46200만개, 46300만개, 46400만개, 46500만개, 46600만개, 46700만개, 46800만개, 46900만개, 47000만개, 47100만개, 47200만개, 47300만개, 47400만개, 47500만개, 47600만개, 47700만개, 47800만개, 47900만개, 48000만개, 48100만개, 48200만개, 48300만개, 48400만개, 48500만개, 48600만개, 48700만개, 48800만개, 48900만개, 49000만개, 49100만개, 49200만개, 49300만개, 49400만개, 49500만개, 49600만개, 49700만개, 49800만개, 49900만개, 50000만개, 50100만개, 50200만개, 50300만개, 50400만개, 50500만개, 50600만개, 50700만개, 50800만개, 50900만개, 51000만개, 51100만개, 51200만개, 51300만개, 51400만개, 51500만개, 51600만개, 51700만개, 51800만개, 51900만개, 52000만개, 52100만개, 52200만개, 52300만개, 52400만개, 52500만개, 52600만개, 52700만개, 52800만개, 52900만개, 53000만개, 53100만개, 53200만개, 53300만개, 53400만개, 53500만개, 53600만개, 53700만개, 53800만개, 53900만개, 54000만개, 54100만개, 54200만개, 54300만개, 54400만개, 54500만개, 54600만개, 54700만개, 54800만개, 54900만개, 55000만개, 55100만개, 55200만개, 55300만개, 55400만개, 55500만개, 55600만개, 55700만개, 55800만개, 55900만개, 56000만개, 56100만개, 56200만개, 56300만개, 56400만개, 56500만개, 56600만개, 56700만개, 56800만개, 56900만개, 57000만개, 57100만개, 57200만개, 57300만개, 57400만개, 57500만개, 57600만개, 57700만개, 57800만개, 57900만개, 58000만개, 58100만개, 58200만개, 58300만개, 58400만개, 58500만개, 58600만개, 58700만개, 58800만개, 58900만개, 59000만개, 59100만개, 59200만개, 59300만개, 59400만개, 59500만개, 59600만개, 59700만개, 59800만개, 59900만개, 60000만개, 60100만개, 60200만개, 60300만개, 60400만개, 60500만개, 60600만개, 60700만개, 60800만개, 60900만개, 61000만개, 61100만개, 61200만개, 61300만개, 61400만개, 61500만개, 61600만개, 61700만개, 61800만개, 61900만개, 62000만개, 62100만개, 62200만개, 62300만개, 62400만개, 62500만개, 62600만개, 62700만개, 62800만개, 62900만개, 63000만개, 63100만개, 63200만개, 63300만개, 63400만개, 63500만개, 63600만개, 63700만개, 63800만개, 63900만개, 64000만개, 64100만개, 64200만개, 64300만개, 64400만개, 64500만개, 64600만개, 64700만개, 64800만개, 64900만개, 65000만개, 65100만개, 65200만개, 65300만개, 65400만개, 65500만개, 65600만개, 65700만개, 65800만개, 65900만개, 66000만개, 66100만개, 66200만개, 66300만개, 66400만개, 66500만개, 66600만개, 66700만개, 66800만개, 66900만개, 67000만개, 67100만개, 67200만개, 67300만개, 67400만개, 67500만개, 67600만개, 67700만개, 67800만개, 67900만개, 68000만개, 68100만개, 68200만개, 68300만개, 68400만개, 68500만개, 68600만개, 68700만개, 68800만개, 68900만개, 69000만개, 69100만개, 69200만개, 69300만개, 69400만개, 69500만개, 69600만개, 69700만개, 69800만개, 69900만개, 70000만개, 70100만개, 70200만개, 70300만개, 70400만개, 70500만개, 70600만개, 70700만개, 70800만개, 70900만개, 71000만개, 71100만개, 71200만개, 71300만개, 71400만개, 71500만개, 71600만개, 71700만개, 71800만개, 71900만개, 72000만개, 72100만개, 72200만개, 72300만개, 72400만개, 72500만개, 72600만개, 72700만개, 72800만개, 72900만개, 73000만개, 73100만개, 73200만개, 73300만개, 73400만개, 73500만개, 73600만개, 73700만개, 73800만개, 73900만개, 74000만개, 74100만개, 74200만개, 74300만개, 74400만개, 74500만개, 74600만개, 74700만개, 74800만개, 74900만개, 75000만개, 75100만개, 75200만개, 75300만개, 75400만개, 75500만개, 75600만개, 75700만개, 75800만개, 75900만개, 76000만개, 76100만개, 76200만개, 76300만개, 76400만개, 76500만개, 76600만개, 76700만개, 76800만개, 76900만개, 77000만개, 77100만개, 77200만개, 77300만개, 77400만개, 77500만개, 77600만개, 77700만개, 77800만개, 77900만개, 78000만개, 78100만개, 78200만개, 78300만개, 78400만개, 78500만개, 78600만개, 78700만개, 78800만개, 78900만개, 79000만개, 79100만개, 79200만개, 79300만개, 79400만개, 79500만개, 79600만개, 79700만개, 79800만개, 79900만개, 80000만개, 80100만개, 80200만개, 80300만개, 80400만개, 80500만개, 80600만개, 80700만개, 80800만개, 80900만개, 81000만개, 81100만개, 81200만개, 81300만개, 81400만개, 81500만개, 81600만개, 81700만개, 81800만개, 81900만개, 82000만개, 82100만개, 82200만개, 82300만개, 82400만개, 82500만개, 82600만개, 82700만개, 82800만개, 82900만개, 83000만개, 83100만개, 83200만개, 83300만개, 83400만개, 83500만개, 83600만개, 83700만개, 83800만개, 83900만개, 84000만개, 84100만개, 84200만개, 84300만개, 84400만개, 84500만개, 84600만개, 84700만개, 84800만개, 84900만개, 85000만개, 85100만개, 85200만개, 85300만개, 85400만개, 85500만개, 85600만개, 85700만개, 85800만개, 85900만개, 86000만개, 86100만개, 86200만개, 86300만개, 86400만개, 86500만개, 86600만개, 86700만개, 86800만개, 86900만개, 87000만개, 87100만개, 87200만개, 87300만개, 87400만개, 87500만개, 87600만개, 87700만개, 87800만개, 87900만개, 88000만개, 88100만개, 88200만개, 88300만개, 88400만개, 88500만개, 88600만개, 88700만개, 88800만개, 88900만개, 89000만개, 89100만개, 89200만개, 89300만개, 89400만개, 89500만개, 89600만개, 89700만개, 89800만개, 89900만개, 90000만개, 90100만개, 90200만개, 90300만개, 90400만개, 90500만개, 90600만개, 90700만개, 90800만개, 90900만개, 91000만개, 91100만개, 91200만개, 91300만개, 91400만개, 91500만개, 91600만개, 91700만개, 91800만개, 91900만개, 92000만개, 92100만개, 92200만개, 92300만개, 92400만개, 92500만개, 92600만개, 92700만개, 92800만개, 92900만개, 93000만개, 93100만개, 93200만개, 93300만개, 93400만개, 93500만개, 93600만개, 93700만개, 93800만개, 93900만개, 94000만개, 94100만개, 94200만개, 94300만개, 94400만개, 94500만개, 94600만개, 94700만개, 94800만개, 94900만개, 95000만개, 95100만개, 95200만개, 95300만개, 95400만개, 95500만개, 95600만개, 95700만개, 95800만개, 95900만개, 96000만개, 96100만개, 96200만개, 96300만개, 96400만개, 96500만개, 96600만개, 96700만개, 96800만개, 96900만개, 97000만개, 97100만개, 97200만개, 97300만개, 97400만개, 97500만개, 97600만개, 97700만개, 97800만개, 97900만개, 98000만개, 98100만개, 98200만개, 98300만개, 98400만개, 98500만개, 98600만개, 98700만개, 98800만개, 98900만개, 99000만개, 99100만개, 99200만개, 99300만개, 99400만개, 99500만개, 99600만개, 99700만개, 99800만개, 99900만개, 100000만개, 100001만개, 100002만개, 100003만개, 100004만개, 100005만개, 100006만개, 100007만개, 100008만개, 100009만개, 100010만개, 100011만개, 100012만개, 100013만개, 100014만개, 100015만개, 100016만개, 100017만개, 100018만개, 100019만개, 100020만개, 100021만개, 100022만개, 100023만개, 100024만개, 100025만개, 100026만개, 100027만개, 100028만개, 100029만개, 100030만개, 100031만개, 100032만개, 100033만개, 100034만개, 100035만개, 100036만개, 100037만개, 100038만개, 100039만개, 100040만개, 100041만개, 100042만개, 100043만개, 100044만개, 100045만개, 100046만개, 100047만개, 100048만개, 100049만개, 100050만개, 100051만개, 100052만개, 100053만개, 100054만개, 100055만개, 100056만개, 100057만개, 100058만개, 100059만개, 100060만개, 100061만개, 100062만개, 100063만개, 100064만개, 100065만개, 100066만개, 100067만개, 100068만개, 100069만개, 100070만개, 100071만개, 100072만개, 100073만개, 100074만개, 100075만개, 100076만개, 100077만개, 100078만개, 100079만개, 100080만개, 100081만개, 100082만개, 100083만개, 100084만개, 100085만개, 100086만개, 100087만개, 100088만개, 100089만개, 100090만개, 100091만개, 100092만개, 100093만개, 100094만개, 100095만개, 100096만개, 100097만개, 100098만개, 100099만개, 100100만개, 100101만개, 100102만개, 100103만개, 100104만개, 100105만개, 100106만개, 100107만개, 100108만개, 100109만개, 100110만개, 100111만개, 100112만개, 100113만개, 100114만개, 100115만개, 100116만개, 100117만개, 100118만개, 100119만개, 100120만개, 100121만개, 100122만개, 100123만개, 100124만개, 100125만개, 100126만개, 100127만개, 100128만개, 100129만개, 100130만개, 100131만개, 100132만개, 100133만개, 100134만개, 100135만개, 100136만개, 100137만개, 100138만개, 100139만개, 100140만개, 100141만개, 100142만개, 100143만개, 100144만개, 100145만개, 100146만개, 100147만개, 100148만개, 100149만개, 100150만개, 100151만개, 100152만개, 100153만개, 100154만개, 100155만개, 100156만개, 100157만개, 100158만개, 100159만개, 100160만개, 100161만개, 100162만개, 100163만개, 100164만개, 100165만개, 100166만개, 100167만개, 100168만개, 100169만개, 100170만개, 100171만개, 100172만개, 100173만개, 100174만개, 100175만개, 100176만개, 100177만개, 100178만개, 100179만개, 100180만개, 100181만개, 100182만개, 100183만개, 100184만개, 100185만개, 100186만개, 100187만개, 100188만개, 100189만개, 100190만개, 100191만개, 100192만개, 100193만개, 100194만개, 100195만개, 100196만개, 100197만개, 100198만개, 100199만개, 100200만개, 100201만개, 100202만개, 100203만개, 100204만개, 100205만개, 100206만개, 100207만개, 100208만개, 100209만개, 100210만개, 100211만개, 100212만개, 100213만개, 100214만개, 100215만개, 100216만개, 100217만개, 100218만개, 100219만개, 100220만개, 100221만개, 100222만개, 100223만개, 100224만개, 100225만개, 100226만개, 100227만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음 - 법안의 “교통시설”은 제13조에서 규정 가능 ※ 복지부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편의증진법 제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장애인 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대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규정과 중복되며 정당한 편의의 개념이 포괄적인 상황에서 이를 의무화할 경우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②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정부안 제1항에 반영하고 삭제 : 복지부 의견 반영	* 제1항과 결합하였으나, 이 조항은 피난, 대피시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존치 요망
③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기구 등을 시설에 들여오거나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안대로 하되 지구수정	* 조정안을 “... 장애인이 동반한 <u>보조건이나 보조기구 등을...</u> ”으로 수정(보조건 포함)
④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장애인등에게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장애인에게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원안대로 하되, “장애인 관련자” 삭제에 따른 지구수정	
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제13조(차별금지)	제15조(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및 교통수단을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u>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이하 도로 및 보도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합쳐 “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u>	* 원안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수용 가능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 및 보도,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의미 명확화 및 지구수정	
②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u>교통행정기관</u> 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구수정	<i>작성방식</i>
③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건의 동승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u> 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구수정	* ... 동반한 보조건이나 보조기구 등의...(보조건 포함)
④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자가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의 개발, 연구, 생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자동차의 구입 및 개조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④ <u>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조한 차량의 이용과 보행을 통한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u> 이를 위해 <u>교통행정기관</u> 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조한 차량 및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 법안 제4항과 제5항은 관계 법령에 유사한 내용으로 정책적 지원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나 시행 중에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 장애인 개인이 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절충하여 법안 제4항과 제5항을 정부안 제4항으로 통합	* 원안에 있는 의무 사항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하여야 함 따라서, 무리하게 하나의 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원안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함
⑤ 장애인등은 대중교통이용 및 자가운전이 어려울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상응한 비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보행을 통한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등	<삭제> ○ 정부안 제4항에 포함하였으므로 삭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⑥ <u>교통행정기관</u> 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교통주관기관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원안대로 하되 자구수정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제5절 정보접근권·의사소통·정보보호	* 조항을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
제14조(차별금지)	제16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 상의 수화통역 지원은 권리적 측면이 아니므로 수화언어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고,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담보할 수 없다.
① 한국 수화는 고유한 언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화, 점자의 육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중증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지원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 문화부 : 수용가능 ※ 복지부 : 삭제 - 지원사항으로 장차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제1항의 '수화언어권'은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권과는 달리 이미 보편화된 의사소통권의 내용으로 <u>원안을 유지하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함</u> -> 어떤 식으로든 “한국 수화는 고유한 언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원안을 유지한 필요가 있음
② 장애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 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화부 : 수용가능 ※ 복지부 : 삭제 - 지원사항으로 장차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정부 조정안 제3조 제1항 제5호임 * 단순히 대리·동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 * 의사소통 매개자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역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③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	※ 문화부 : 수용가능	* 민간시설에 대한 규정도 존치하되, 시행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음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인계 조정안
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복지부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구수정>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는 당해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포함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보청기기,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통부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의 범위 불분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사항은 정보격차해소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규정 - 장차법안 제14조 제4항, 제5항, 제7항에 규정된 자막, 수화, 점자, 큰 문자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수단은 정보격차해소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규정 - 정보격차해소법 수정안 · 기존 :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 장애인이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속기사)·대필자·음성통역자·낭독자의 배치, 점자 및 큰 문자, 보청기기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 정통부(안)과 같은 ‘정보통신’만이 아니라 ‘정보’로 확대되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의 측면보다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차별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원안과 같이 서비스의 종류를 일부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11월 6 * ...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 수정안 :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장애인·노령자가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복지부 : 삭제 - 지원사항으로 장차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 관련조항 : 장애인복지법 제20조(정보에의 접근)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 장애인이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숙기사)·대필자·음성통역자·낭독자의 배치, 점자 및 큰 문자, 보청기기 등을 3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통부 : 소관 불분명 ※ 복지부 : 삭제 - 지원사항으로 장차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 관련조항 : 장애인복지법 제20조(정보에의 접근)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둘 것인가 차별구제 측면에 둘 것인가에 따라 내용 중복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의 취지를 살려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임 * 이 조문은 정통부 뿐만 아니라 문화부 등 타 부처도 포함되므로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정통부 안보다는 확대되어야 함
⑥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 정통부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관련 사항(출판물을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리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주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용자는 이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보며,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이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기기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인계 조정안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 프로그램,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업자)은 정보격차해소법 제7조 2항에 의해 규정 ※ 문화부 : 수용기능	에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보통신제품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자막, 음성, 수화, 점자, 촉각, 큰 문자, 빛 등의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통부 : ⑦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격차해소법 수정안 · 기존 : 정보격차해소법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정안 :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장애인·노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처의견> ※ 정통부 : ③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이용·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법 제22조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
		* 가급적 원안을 유지하도록 수정하되, 지원의 측면보다는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 개발·보급의 의무가 있다.	령자가 장애인·노령자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통부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기기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 도서관, 기타 위 각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통부 : ⑨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 제품 관련 사항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정보보호법 제23조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보호법 제24조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 조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전체 조문 구성에 따라서 정부 조정안을 탄력적으로 수용하되 전반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교육부 : ③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 혹은 장애인 후견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후략)	
제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차별금지)	제20조(차별금지)		
①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안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안		
③ 주거 및 업무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에 대해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안(“장애인 등” → “장애인” 자구수정)		
④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④ 원안(“장애인 등” → “장애인” 자구수정)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거부하거나, 해당 재화·용역의 이용으로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인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구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원안	
⑥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이를 제공함에 있어 그 특성상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안	
제7절 문화·예술	제7절 문화·예술	
제16조(차별금지)	제21조(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o 원안대로 하되 자구수정	* 수용 가능
②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증진시킬 의무,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② 원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	③ 원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예술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절 체육	제8절 체육	
제17조(차별금지)	제22조(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원안	
② 체육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원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④ 원안	
제9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9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18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3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받을	① 원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권리가 있다.		
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안	
③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그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안	
④ 장애인은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인신구급·구속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안	
제19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4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안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차별로 본다.	② 원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		
제20조(참정권)	제25조(참정권)	
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① 원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원안	
③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안	
제10절 모·부성권	제10절 모·부성권	
제21조(차별금지)	제26조(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① 원안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만을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안	
③ 교육책임자 및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③ 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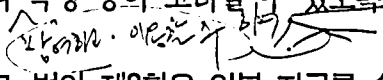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출산·양육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혹은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등에 필요한 정보, 정책 및 활동보조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도구의 개발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산후조리기관, 입양기관 등이 장애인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임신(피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안 제4항과 제5항을 합쳐서 규정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내용의 실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규정 - 임신 및 피임의 지구를 수정하고, 문장 서술 순서를 조정 ※ 복지부 : 법안 제4항과 제5항은 장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고 삭제 - 차별이 아닌 지원사항으로 장차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합리적 범위로 조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공사가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조정안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6항에 이와 유사한 형식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항은 유지하되 홍보·교육·지원을 포함하여 규정 ※ 복지부 : 삭제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직접 혹은 그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지원받는 기관도 포함되어야 함 차별금지... 제도 개선도 필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을 하자는 의미가 아님
제11절 성	제11절 성	
제22조(차별금지)	제27조(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① 원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② 가족, 가정, 시설의 구성원은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제한 등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여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가족, 가정, 시설”을 “가정 및 복지시설 등”으로 수정하고 본문의 서술형식을 수정 ※ 복지부 : ② 시설주는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족, 가정의 사적 차별까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수용 가능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피임도구, 성향유공간, 보조도구 및 성교육 교재·교육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포함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기타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법안 제3항과 제4항을 합쳐서 규정하고 문구수정 ※ 복지부 : 제3항과 제4항 모두 삭제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결합시키더라도 원안의 취지를 살렸어야 함 → 원안 유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편견·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12절 가족·가정·시설	제12절 가족·가정·시설	
제23조(차별금지)	제28조(차별금지)	
① 가정·가족 및 시설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인격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인만을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수정 ○ 법안의 “장애인의 인격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라는 문구는 법률로 규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아 삭제하고, 의사결정과	* 수용 가능함 의사결정 41b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정에서의 배제와 관련하여 “장애만을 이유로”는 “장애를 이유로”로 수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 ※ 복지부 : ① 시설주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 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족, 가정의 사적 차별까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② 가정·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자구수정 ※ 복지부 : ② 시설주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족, 가정의 사적 차별까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할 수도 있음
③ 가정·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조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안 제3항과 제5항을 합쳐서 규정하고,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가정 및 복지시설 등”으로 자구수정 ○ 법안의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는 조정안 제3조(차별판단)의 수정내용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로 수정 ※ 복지부 : ③ 시설주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설주는 장애를 이유로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를 제한 또는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족, 가정의 사적 차별까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④ 가족이나 가족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박탈하여서는	④ 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아니 된다.	는 구성원이었던 자”로 자구수정. “장애를 이유로”를 추가 ※ 복지부 : 삭제 - 가족, 가정의 사적 차별까지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⑤ 가정·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에의 자유를 제한 또는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안 제3항에 통합하여 규정	
⑥ 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 등”으로 자구수정.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가정 및 시설 내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가정 및 시설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삭제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이 조에서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 역시 이 조에서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조정안 제12조(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및 제13조(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유사한 형식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에 규정된 것과 추가비용 지원은 의미가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 등이 시책을 강구한다는 사실과 장애인이 실제 생활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장애인의 개별적인 차별금지의 실현 및 권리구제가 실제적으로 곧 바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시책 강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책강구와 실제 생활에서의 차별금지를 구분하여 후자를 이 법에 규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즉, 건축물이나 시설, 교통수단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 개인이 이들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 논리적으로	*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한 삭제할 수 없음 -> 존치 의견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는 이 권리구제의 사례가 건축물·시설·교통수단 등에 관련된 모든 시책에 적용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이들의 이용은 공간적으로 제한되고 개별 장애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책의 강구와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간의 구분은 지속적으로 의미를 가짐. · 반면 추가비용은 일단 개별적인 상황에서 이 비용이 인정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로는 곧바로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처럼 모든 장애인에 대해 적용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현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현금액수는 평균비용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음. 추가비용이 평균비용으로 전환되는 한 시책의 강구와 개별적인 권리구제의 구분이 갖는 의의는 상당 정도로 사라지게 됨 (몇 가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로 각기 다른 평균비용을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추가비용의 지원은 개별적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의 의의를 별도로 인정하여 이 법에 규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고 판단	
제13절 건강권	제13절 건강권	*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제24조(차별금지)	제29조(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o 법안의 후단 규정 삭제 : 복지부 의견 반영	-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차별하지
②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적 판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험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료 체계의 적용 및 의학연구에 있어서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행위와 의학연구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의 특성 등"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특성 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o 법안 제2항과 제3항을 합쳐서 규정하되, 법안 제2항의 경우 "의료적 판단", "의료체계의 적용"은 "의료행위"로 수정하고 후단 규정은 삭제. 법안 제3항은 의료정보 제공 관련 내용을 정부안 제2항의 후단에 규정 : 복지부 의견 일부 반영	
③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관한 장애인에게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한다.		
④ 공공기관은 자신이 시행하는 건강과 관련한 모든 교육 과정에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자신이 시행하는 건강과 관련한 <u>교육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u> 하여야 한다. ○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수정 : 복지부 의견 반영	
⑤ 공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원 등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u>정당한 편의</u> 를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 조정안 제2조 제1항 제19호에서 편의증진법에 따라 시설을 정의하였고 이 시설의 정의에 공원이 포함되며, 또한 조정안 제12조 제1항에 시설 접근·이용·비상시 대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규정하였으므로 법안 제5항은 조정안의 위 규정들과 중복됨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그리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기기, 보조기구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건강을 대상으로 한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u>특성 등의 고려될 수 있도록</u>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법안 제6항과 제7항은 삭제하고, 법안 제8항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반영	* 제6-8항은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서 별도로 규정할 의미가 있음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집행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복지부 : 법안 제6항 내지 제8항 모두 삭제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건강을 대상으로 한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집행에 있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담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절 폭력	제14절 폭력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제25조(차별금지)	제30조(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① 원안	
② 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기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안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관련자”의 삭제에 따른 자구수정 ※ 복지부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한 장소를 명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장소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등”은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등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관련자”의 삭제에 따른 자구수정 ※ 복지부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한 장소를 명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장소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등”은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ㄴ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인	* 원안 그대로 의미가 있으므로 존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식개선 및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의료적·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식개선 및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제한하여 존치 ※ 복지부 : 삭제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1절 장애여성	제1절 장애여성	* 정부 조정안을 대체로 수용 가능함
제26조(차별금지)	제31조(차별금지)	
① 장애여성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원안 ※ 복지부 : 삭제 - 제4조(차별금지)와 내용 중복	*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임
② 장애여성은 임신·출산·양육·가사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조건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여성은 임신·출산·양육·가사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안 후단 규정의 “이를 조건으로”는 그 지칭대상이 불명확 - 즉, 사회참여활동의 제한이 “임신·출산·양육·가사”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 일어난 것인지 혹은 임신·출산·양육·가사를 “장애여성”이 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일어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 만일, “임신·출산·양육·가사”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 사회참여활동을 제한한다면 이는 반드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 보기 어려움. 또한, 설혹 임신·출산 등이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단기간의 손상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경우의 “임신·출산”은 여성으로서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의 한 종류가 되어 이 법의 차별금지 규정으로 규율가능한 것이 되어버림. - 이는 <u>복합차별의 문제</u> 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해결토록 하고, 이러한 복합차별 문제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문안을 법안에 미리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해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탁아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수유보조 및 방법의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장애여성근로자가 사내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항	o 이와 같은 이유로 법안 제2항 후단 규정은 삭제 원안	
④ 교육기관, 시설,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식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기관, 시설,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u>시설의 종사자 및 장애여성을 대상으로</u> 성인식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시설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므로 “시설의 종사자”를 추가 : 여기부 의견 반영	
⑤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성별이나, 여성 간의 장애유무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④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o 법안의 “장애인의 성별이나 여성 간의 장애유무에 따라 … 행·재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정적 지원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되며”는 그 취지는 이해하나 동문장 서술에 있어서 사유의 서술이 복잡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달리 한다는 것이 반드시 차별이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유를 장애여성으로만 단순히 서술해도 이 조항을 규정한 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 이를 “장애여성”으로 단순화하고 또 교육·훈련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함.	
⑥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는 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 과정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무시, 희롱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는 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을 <u>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u>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 과정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무시, 희롱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존치하되, “정당한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지구수정	
제2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원안 ② 원안 ○ 법안 제27조는 동조 규정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조 제1항은 강구조항이고 제2항은 이 법이 규정한 차별금지의 범위를 특별히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애여성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주의의무를 촉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굳이 삭제할 이유 없다고 봄 ※ 복지부 : 삭제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제2절 장애아동	제2절 장애아동	
제28조(차별금지) ① 장애아동은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② 장애아동은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에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3조(차별금지) ① 원안 ② 원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③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안	
④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원안	
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및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무리한 재활 치료 및 훈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안	
⑥ 누구든지 관습, 사상, 종교적 태도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안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각 조항마다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존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격이 보장되고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법안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은 법안 제1항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제1항 내용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이를 강구조항으로 수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 복지부 : 삭제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의 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그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 등 보호자가 적절한 정보, 위탁, 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o 법안 제4장 조정안의 원칙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소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로 두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구성과 기능,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 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함.	* 원칙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시정명령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함 * 다만, ① 만일 인권위 내에 둔다면,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전문위 정도가 아니라, 장차법안 정도의 위원회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고, ② 만일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제38조에 정한 바와 같은 수준의 법원에 의한 긴급구제, 임시구제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제1절 설립 및 운영		
제30조(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35조(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설치)	
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향상시키기 위하여 <u>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을 시정·구제하는 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o 위원회는 별도로 두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되, 인권위 내에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형식으로 설치·운영 - 독립적 차별시정기구 주장도 타당성이 없지 않으나 '04년 12월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이 결정되어 시행 중임을 고려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는 복합차별 문제의 해소에 유리 - 인권위 내에 두더라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어 운영이 가능함 -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할 경우 자칫 시정권한 등에서 이원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권위라는 동일 기구 내에서의 차별사유에 따른 시정권한의 이원화가 법리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o 위원회를 인권위 내에 둬야 따라 법안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	삭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립하여 수행한다.		
③ 각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두되,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제31조(업무)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2조(국가기관과의 협의)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3조(위원회의 구성)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4조(위원장의 직무)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6조(위원의 신분보장)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7조(위원의 결격사유)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8조(위원의 겸직금지)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9조(소위원회)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1조(의사의 공개)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2조(위원의 서명·날인)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3조(자문기구 및 전문위원)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4조(사무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제4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6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2절 조사와 구제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7조(정책 및 관행의 개선, 시정권고)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8조(장애인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49조(장애인 인권자료실)		
①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제1안 : 인권위법 제27조(인권자료실)에 장애인 인권자료실을 두는 것으로 하고 삭제 제2안 : 법안의 원안대로 존치. 단, 제2안의 경우 “도서관법”으로 자구 수정	
② 장애인 인권자료실은 장애인 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장애인 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 장애인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1조(보고서 작성 등)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3조(청문회)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제54조(진정)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관련 규정 없음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진정의 각하 관련 규정 없음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5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6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7조(조사의 방법)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8조(위원의 제척 등)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9조(진정의 기각)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 진정 각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제60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1조(조정)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2조(긴급구제 조치의 요구)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3조(시정권고)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4조(시정명령)	○ 시정명령 관련 -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서는 시정명령권 규정 삭제 -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시정명령권은 장애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 내에 둬를 전제로 국가인권위 내의 기구에 특별히 시정명령권을 두는 것의 법률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 ○ 만일 장애차별시정기구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경우	* 시정명령권은 독립된 차별금지위원회의 핵심적인 권한이므로 조정이 불가능함 다만, 시정명령권 발동에 관하여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수준으로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정할 여지는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하지 않을 경우 2. 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3. 제61조 제2항 또는 제63조 제6항에 의하여 <u>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u>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제6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시정명령권 규정에 준하여 명령권 발동요건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 현재 법안에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법안 제85조)과 사회봉사·수강명령(법안 제78조 제1항)을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여 이행강제금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벌칙이라기보다는 시정명령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격 부여함 - 이와 함께 현행 법안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벌칙은 이것이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치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럼에도 이행강제금 납부거부 등 시정명령 불이행이 악의적인 경우에 부과하는 벌칙으로 규정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제31조 (시정명령) ① 제63조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대하여 차별을 행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u>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u>, 위원회는 차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재경부 : 시정명령권 도입 반대 - 차별시정기구는 법원을 이용하기에 앞서 신속하고 쉽게 이용가능한 대안적 권리구제 기구 -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대신 권고조치에 한정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강제력 있는 권리구제는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강한 제재수단 도입할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고, 법원과 판단이 다를 경우 혼란 초래 - 현재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에는 시정명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산자부 : 시정명령권 도입은 신중 검토 필요 -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차별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함	장애인- 1. 인권위 상한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기피 요인이 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아직 시정명령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시정명령권을 최소화하거나 타 법령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 : 시정명령권 도입은 신중 검토 필요 - 법률에 명시된 차별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위원회는 법안 제63조에 따라 시정권고도 할 수 있고 법안 제67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시정명령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법안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또한 조정을 거부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한다면 조정이 사실상 강제되거나 권고 자체가 권고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법안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또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의 배상청구 외에 형사처벌성격의 시정명령이 필요한지는 의문(법안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 장애인 인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 및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부여되지 않은 시정명령권을 장애인차별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관련 규정		
없음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5조(이의신청)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6조(소의 제기)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관련 규정		
없음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제00조 (이행강제금 등)	*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벌칙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 규정에 두는 것도 무방함
제6장 벌칙의 제85조로 규정되어 있음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동 정부안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 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적 시정명령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조정안임 법안에서 벌칙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은 삭제하고 대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 도입 ○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또 형사적인 처벌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벌칙은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 거부 등 지극히 악의적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토록 조정 ○ 또한, 시정명령권 발동의 최초 사유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불이행이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앞서 위원회로 하여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① 위원회는 제64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64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 자로서 그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의 최초 사유가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불이행인 경우에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앞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기간은 500시간 이하로 하되 240시간 미만일 수 없다.	240시간
<신설>	⑦ 위원회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67조(고발 및 징계권고)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6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70조(처리결과의 공개)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3절 보칙		
제71조(자격사칭의 금지)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72조(비밀누설의 금지)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7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74조(공무원 등의 파견)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7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인권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인권위법에 위임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76조(손해배상)	제00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악의에 의한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은 5백만원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차별행위를 고의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로 추정한다.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전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은 5백만원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o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참고하여 규정	*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를 고의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정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 재경부 :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도입 및 정신적 손해배상액 하한제 도입 반대 - 우리나라 민법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있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필요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요건 : ①소액의 피해가 ②다수에게 발생하고 ③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④파급효과가 큰 경우 ⑤예외적으로 인정 -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큰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 또한,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으면 손해배상의 판단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경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리 ※ 산자부 :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도입은 신중 검토 필요 -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배상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맞지 않음 - 공적인 성격의 징벌금이 형법의 벌금처럼 국가에 귀속되는지 개인에 귀속되는지가 현행 법 체계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국의 소송례(담배)에서와 같이 일부 변호사와 그 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피해당사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 필요 ※ 법무부 :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도입은 신중 검토 및 정신적 손해배상액 하한제 설정은 삭제 필요 - 제한적 성격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방지, 위자료제도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미국 등 일부 영미법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인 차별행위, 인과관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가해자에게 전환시킨 상태에서(법안 제77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마치 피고가 무죄입증책임을 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형벌을 부과받는 형태가 되어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을 임의로 5백만원 이상으로 법정 한 것은 개개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성이 의심되므로 삭제 필요	
제77조(입증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00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일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의 제목을 “입증책임의 배분”으로 수정. 법안의 본래 취지상 증명책임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자체의 존재 입증에 관련된 책임과 그 행위의 부존재 혹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리는 점의 입증에 관련된 책임이 양 쪽 당사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임. -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산자부 : 입증책임배분제도 도입은 신중 검토 필요 - 입증책임전환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체계 하에서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장애를 이유로 고용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차별 소송에서 본인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용차별 사실을 주장하면 사용자 측에서 반증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입증책임의 분배 규정에 동의하나, 대통령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적용의 제한 관련 규정 없음	제64조, 제76조, 제77조의 규정은 제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 원칙적으로 적용의 제한에 반대함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경우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 시정명령,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배분은 차별금지규정에만 적용토록 제한 : 차별금지법 권고법안 참조 ○ 시정명령권이 도입될 경우의 정부안임. 시정명령권을 도입치 않을 때에는 불필요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 형량에 대해서는 인권위법 등 관련 법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할 수 있음
제78조(차별행위)	제00조(시정명령의 불이행)	
① 장애인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처한다. ② 이 법에 정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행위의 성격상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시정명령권이 도입될 경우> 이 법에 정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로서 그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악의적으로 거부·회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안의 벌칙규정을 이행강제금 납부거부에 대한 벌칙으로 수정 - 법안 제85조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옮겨 규정하고 법안 제78조 제1항의 규정도 이동된 이행강제금 규정에 함께 규정 <시정명령권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조항을 두고 형사고발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 고려	* 제1항은 주로 교육형을, 제2항은 시정명령권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조문을 나누더라도 원안은 유지되어야 함
제79조(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권위법 참조 수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0조(자격사칭)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권위법 참조 수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제81조(비밀누설)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원안	
제82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권위법 참조 수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원안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73조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⑥	원안(조사방행 등에 대해 인권위법도 제63조에서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규정) 인권위법 참조 수정(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안	
제85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4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	시정명령권을 규정한 부분으로 이동하여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정부 조정안	장애계 조정안
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 3월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4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단계적 확대 - 고용영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구 증가추이 및 장애인들의 권리의식 향상정도, 의무고용제에의 직업적 장애개념 도입 시기('10년 예상) 등을 감안 ① '09년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시행 ② '11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③ 이후 적절한 시기에 3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확대 - 나머지 차별영역 : 개별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	* 총/각론의 각 규정의 시행 시기나, 적용범위, 적용대상을 정리하여 부칙에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